

제 1323 호

1986. 10. 29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 도청
편집인: 공 보 관 김 도청
전화: 731-6111-3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공보관	1986.	시	본	번호	1323	공보계장	김도청
김인기						보도계장	

시보

차 례

- ◎ 조 례
 - 제 2114 호 :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후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 3
 - 제 2115 호 :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후원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3
 - 제 2116 호 :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에관한제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
 조례 4
 - 제 2117 호 : 서울특별시개마울소독특별지원사업자금유출관리조례중개정
 조례 4
- ◎ 사 령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진흥회의, 서울공무
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하 공
포한다.

1986.10.29

서울특별시장 영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14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 일반회계 정원표의 3급
정원 "4"을 "5"로 하고 정원
내용중 지방부이사관, 지방서장부기감
또는 지방공업부기감 "4"을 "5"
로 하고 합계란 정원 "1,680"을
"1,68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하 공포

한다.

1986.10.29

서울특별시장 영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15 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사회복지시설" 나
음의 "등"을 삭제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업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
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
탁운영과 사립청소년과 공동 기타 목
적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
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중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시설의 역할 및 관장)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목
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
칭 및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제 2 조에 제 11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회관
가. 청소년의 사회교육 및 상담지도
나. 독서실 운영

다. 기타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항
제 11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에 관한 수수료 및 지
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0.29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㉞

◎서울특별시조례제 2116 호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에 관한
제 수수료 및 수수료조례중 개정조례

제명중 “종합기술시험연구”를 “보전
환경연구”로 한다.

제 1 조중 “종합기술시험연구소에 보전
연구”를 “보전환경연구소에 보전
환경”으로 한다.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검사 및 시험수수료와 성적서 제
교부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국립보
건원 시험의뢰 규칙 제 8 조 및 국
립환경연구소 시험의뢰규칙 제 7 조

에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장”을 “서울특별시 보전환경연구소
장”으로 한다.

제 3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 및 시험의뢰된 항목중 시
험이 불가능한 경우 국립보건원 또
는 국립환경연구소에 의뢰토록 한
다.

제 4 조와 별표 1 및 별표 2 를 삭제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
에 시행전에 이미 의뢰된 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0.29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㉞

◎서울특별시조례제 2117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
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를 각각 제 9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로 하고 제 7 조 내지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 (용자금 상환기한) 용자금의 상환은 연 1 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 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만기의 말일 (6.30 일, 12.31 일)로 한다.

제 8 조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시장위원회 또는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연장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 1 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전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가산금 및 독촉) 상환금을 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시중은행 연체이자가 붙어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 상환을 상환기한 경과 1 월, 2 월 및 3 월 후 각각 10 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본인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 9 조의 규정이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징수할 때에는 제외로 한다.

제 11 조 (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회 추징금의 액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10 일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 10 조의 규정이 의하여 상환동작을 받고 기한거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86년 10월 29일

경제 44 호

성 명	발 령 부 서				현 부 서			
	부 서	장 위	직	급	부 서	직	급	급
실금주	투자관리담당관				내무국			

성명	발령부서			상부서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원세훈	법무담당관직대		시기관	성동구	도시정비국장	지방서기관
이유태	성동구	도시정비 국장직대	지방서기관	법무담당관		서기관
김병석	복직을 명함			내무국		지방서기관
서동기	서대문구	건설국장		//		//
조세운	구로구	시민국장		세종문화회관	사무과장	//
이상진	동작구	//		내무국		//
이희봉	세종문화회관	사무과장		강동구	공녹기과장	지방농림기과
	한강관리사업소	시설과장	지방농림기과			
서갈특별시장						